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및 의무복무 규정〉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62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적검토	2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2
(2)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7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	8
3. 학비 지원 및 지원 중단·의무복무	11
(1) 학비지원 및 반환 규정	14
(2) 의무복무	16
4. 교육·실습기관	18
※ 참고자료	20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20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22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23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수업료 및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u>거점대학으로</u>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 ----- ----- <u>거점대학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u>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둔다. 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비 등의 지원절차 및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33조(의무복무)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인천광역시장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현행	개정안
<신 설>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무복무 기관의 배치·변경 및 복무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현행	개정안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u> <u>1.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u> <u>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u> <u>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4.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실습기관)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의료원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31조(부설학교 등) (생략)	제36조(부설학교 등)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2조(「민법」의 준용) (생략)	제37조(「민법」의 준용)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제33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략) <u>제34조</u>(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u>제33조</u>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행 제33조와 같음) <u>제39조</u>(과태료) ① ----- -----<u>제38조</u> ----- ----- ----- ----- ----- · ② (현행과 같음)

(2)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음.

< 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	--------------------------	--------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제정안 외에도,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¹⁾,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²⁾이 상정되어 있음.

2.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안 제28조)

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인천대학교를 특정하여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u>거점대학으로</u>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 ----- ----- <u>거점대학 및 지역 공공 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u>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둔다.</u>

1) 의안번호 제220027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200474호,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³⁾,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음.

법 제정이 되는 경우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는 달리 별도의 법률로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인천대학교 의과대학만에 특별히 적용되는 의무복무 등의 규정을 두게 됨.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공공, 필수분야 의사부족과 인력 확충을 위해 2

3)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어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4)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대학 중심으로 확대했으며,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특정대학 및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가천대학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특정 지역에서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의과대학 설립 요구를 야기하고 기존 서비스 공급체계와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기존 40개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임.

울산대 의과대학은 제정안이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합의문 1항에 제시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항목에 반하며, 또한 3항의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한 4대 정책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포함)의 협의체 논의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임.

제주대학교는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상태로 수도권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세금의 낭비이며, 인천 지역 내의 의료 인력이 충분한 상태로, 추가 의과대학 설립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임.

3. 학비 지원 및 지원 중단·의무복무(안 제32조부터 제34조)

개정안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10년 동안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공공의료보건업무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등록금, 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비 등의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33조(의무복무)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현행	개정안
	<u>보건의료업무에 종사(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u>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인천광역시장이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현행	개정안
<신 설>	우 ③ 의무복무 기관의 배치·변경 및 복무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 때

현행	개정안
	<u>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④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학비지원 및 반환 규정

개정안에 따를 때,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전라남도 지역에서 의무복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보건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업 정지 시 학비지원을 중단하는 것, 의무복무 불이행시 지원금액에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 등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학비반납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도 제정안과 그 요건이나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사관학교	· 별도 규정 없음. - 다만, 입학과 동시 군적에 편입, 대부분 의무복무 이행 -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이나 전학 금지
경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하는 경우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무복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한국 농수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2) 의무복무

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업연수를 일반적인 의과대학과 같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총 6년⁵⁾으로 보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학비지원기간의 약 1.7배 수준임.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배~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의업의 경우 수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졸업 후 사회에서의 취업기회가 많으며 소득이 높다는 점에서, 의무복무의사의 복무기간을 10년 정도 장기로 설정하여야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5)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 의무복무기간 현황 >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육/해/ 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 양성	육군 장교 양성	군 간호장교 양성	경찰간부 양성	농어업인력 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 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 학사학위	학사학위 (법학/ 행정학)	전문 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의무복무 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 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 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6②③ 및 §7①			법 §10①	법 §9①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 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5①			령 §23등6)	령 §12②7)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의과대학의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복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교육·실습기관(안 제35조)

개정안은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그 외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도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교육·실습기관)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의료원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실습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

6)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7)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u>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u> 1.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u>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u>

이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이미 인천광역시 내에 존재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다른 상급종합병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천광역시 내에는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문의처
02)6788-5188

※ 참고자료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 [제4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 [제5조제1항 관련]

학생 정원 (편제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교원 산출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수익용 기본재산 [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학교수	정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지역	대학명	2024학년도 정원	배정	2025학년도		
				정원 (A)	모집인원 (정원내) (B)	차이 (B-A)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134	△1*
		경희대		110	110	0
		연세대		110	110	0
		한양대		110	110	0
		고려대		106	106	0
		가톨릭대		93	93	0
		중앙대		86	85	△1*
		이화여대		76	76	0
	서울	826	0	826	824	△2
	경기	성균관대	80	120	110	△10
		아주대	80	120	110	△10
		차의과대	40	80	80	0
	인천	인하대	71	120	120	0
		가천대	90	130	130	0
	경기·인천	209	361	570	550	△20
	수도권 소계	1,035	361	1,396	1,374	△22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83	132	91	△41
		연세대 분교	7	100	100	0
		한림대	24	100	100	0
		가톨릭관동대	51	100	100	0
	경북	동국대 분교	71	120	120	0
	대구	경북대	90	200	155	△45
		계명대	44	120	120	0
		영남대	44	120	100	△20
		대구가톨릭대	40	80	80	0
	경남	경상국립대	124	200	138	△62
	부산	부산대	75	200	163	△37
		인제대	7	100	100	0
		고신대	24	100	100	0
		동아대	51	100	100	0
	울산	울산대	80	120	110	△10
	전북	전북대	58	200	171	△29
		원광대	57	150	150	0
	광주	전남대	75	200	163	△37
		조선대	25	150	150	0
	제주	제주대	60	100	70	△30
	충남	순천향대	57	150	150	0
		단국대(천안)	80	120	80	△40
	충북	충북대	151	200	125	△75
		건국대 분교	60	100	100	0
	대전	충남대	90	200	155	△45
		건양대	51	100	100	0
		을지대	60	100	100	0
	비수도권 소계	2,023	1,639	3,662	3,191	△471
	합계	3,058	2,000	5,058	4,565	△493